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06. 6. 23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옥외광고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옥외광고업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광고물설치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안 제2조)
 - 제2조제1항제2호중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를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로 한다.
 - 제2조제1항제6호중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를 “영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규정(안 제31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옥외광고물 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을 구비하도록 규정(옥외광고대행업은 6.6㎡이상의 사무실로 같음)

-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 중 법령명칭 변경(안 제32조)
 - 「향토예비군법」⇒「향토예비군설치법」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 5)
 -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참고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을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영 제4조제8호의”를 “영 제4조제1항제8호의”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6항제3호중“「향토예비군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 설 기 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구 미 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5항)

-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5만원 30만원 3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5만원 60만원 79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2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40만원 49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 액 이하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마. 기타 고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 바. 강제 철거한 광고물의 반환 과태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 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입간판에 준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가. 30일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 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생략) 1. (생략)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5. (생략)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생략)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5미터 미만 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5. (현행과 같음)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 7. (현행과 같음)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 기술능력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은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⑥ (생략) 1.~2. (생략) 3. 「 <u>향토예비군법</u>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생략)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향토예비군설치법</u> 」 -----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 ①법 제 17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 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 ----- ----- ----- ----- <u>옥외광고업</u> <u>등록 수수료</u> ----- ----- ----- -----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광고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용어 변경

【별표 4】

(현 행)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4】

(개 정)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현 행)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다) (생 략)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생 략)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80만원 +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다) (생 략)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생 략)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 5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다) (생 략)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생 략)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50만원 + 10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다) (생 략)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생 략)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50만원 +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다) (생 략)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생 략)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50만원 + 10만원
(4) (생 략)	(생 략)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개 정)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u>이하</u>	80만원 +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u>이하</u>	50만원 + 5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u>이하</u>	50만원 + 10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u>이하</u>	50만원 +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u>이하</u>	50만원 + 10만원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다. 벽보 (생 략)	(생 략)	(생 략)
라. 전단 (생 략)	(생 략)	(생 략)
마. 기타 고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	(생 략)	
바. 강제 철거한 광고물의 반환 과태료	(생 략)	
(신 설)	(신 설)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생 략)	(생 략)	(생 략)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다. 벽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전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 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가. 30일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u>·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u> <u>·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u> <u>·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 <u>·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u> <u>·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u>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 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현 행)

- (1) (생 략)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생 략)
- (4) (생 략)
- (5) (생 략)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개 정)

- (1) (현행과 같음)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